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4월 12일, 권광택 의원 외 20명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권광택 의원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 공공건축물 대상(안 제3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등(안 제5조)
- 인증취득 및 인증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안 제6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수수료 지원(안 제7조)
- 인증받은 공공건축물 누리집 공시 및 인증제도 홍보(안 제8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경형)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함.
-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증기준, 인증취득, 인증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공시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함.

다. 종합의견

- 경상북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공공건축물은 860개소(학교 795, 기관 65)이며, 학교수는 795개소(유치원 21, 초등학교 491, 중학교 189, 고등학교 91, 특수학교 3)임.

- 최근 3년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¹⁾ 인증 대상 학교수는 77개소(2021년 6, 2022년 24, 2023년 4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64개소(예비인증²⁾ 56, 본인인증³⁾ 8)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인증됨.

【 개념 정리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말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시설물을 계획·설계·시공·관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이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함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계획·기획·시공 관리를 함에 있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1) 우리나라는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2008년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국가가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가 시행 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많은 건축물에 BF인증이 적용되어지고 있음.

2) 예비인증 :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본 신청 전 인증)

3) 본 인 증 : 대상시설의 공사완료 이후 하는 인증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